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기웅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1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9.

발 의 자 : 김기웅 · 배준영 · 박성훈
서범수 · 이만희 · 백종현
서명옥 · 이종배 · 이달희
김 건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주민신고제도 활성화에 따라 도시가스·전기 등 공익사업자의 안전관리 차량이 사고 우려 현장 또는 시설 이상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

특히, 가스누출, 배관 파손, 전력설비 이상 등은 초기 대응이 지연될 경우 화재·폭발, 정전 등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신속한 현장 출동과 응급조치가 필수적임.

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차, 구급차 등 일부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만 주·정차 금지 등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, 국민의 일상생활과 안전에 필수적인 전기사업,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은 긴급한 안전조치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고 긴급 안전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현행 하위법령에서 긴급자동차로 분류되는 전기사업, 가스사업 및 그 밖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, 구급차와 소방차와 같은 수준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각종 가스누출, 전기누전 등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22호라목 신설 및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전기사업, 가스사업,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

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”를 “제2조제22호가목부터 라목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21의3. (생략)</p> <p>22. “긴급자동차”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라. (생략)</p> <p>23. ~ 34. (생략)</p> <p>제30조(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)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<u>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</u>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21의3. (현행과 같음)</p> <p>22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라. <u>전기사업, 가스사업,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</u></p> <p>마. (현행 라목과 같음)</p> <p>23. ~ 3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0조(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)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2조제22호가목부터 라목까지</u></p> <p>----- -----</p>

<p>만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~ 12. (생략)</p>	<p>---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